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20.(금) 15: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11. 22.(일) 09:00
(지 면)2026. 11. 23.(월) 조간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신도시 등의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영아반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시간제 보육' 추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교육부령 제397호)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의 영아반만 운영 허용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아반만으로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도시 등 영아 보육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육수요를 고려해 영아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영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시간제보육' 추가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취약보육과 함께 '시간제보육'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추가하여, 이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시간제보육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보육 현장과 소통하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김성근 (044-203-7202)
		담당자	사무관	이혜빈 (044-203-7209)
			주무관	성지윤 (044-203-72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이후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7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등으로 정하여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등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영아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아반 입소대기가 장기화되는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아반 운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22. ~ 8. 31., 7. 30. ~ 9.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자격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내용

가.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나.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다.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의 이해

라. 그 밖에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법 제23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2.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비용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제1항 중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장애아 입소 등”으로 하

고, 같은 목 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반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하여 유아반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8의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8조제1항 각 호의 취약보육 및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재발급 신청 시란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재선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생략)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자격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내용

	가.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 학대의 유형과 사례 나.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다.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의 이해 라. 그 밖에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법 제23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2.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비용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

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제출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별지 제18호의4서식---- ---------- 발급해야 ----.